

의안번호	제730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의자 : 박지현,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이동우, 이상정,  
유재목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생활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2. “보호아동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
4.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 2. 비용 발생 요인

-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문화활동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3. 관련조문

- 안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의 학령별 문화활동 지원

#### 나. 추계 결과

- 문화활동비 지원 : 451명, 339,600천원 (도비 40, 시군비 60)
  - 초등학생 30천원 × 149명 × 12개월=53,640천원
  - 중 학 생 50천원 × 149명 × 12개월 = 89,400천원
  - 고등학생 80천원 × 84명 × 12개월 = 80,640천원
  - 대 학 생 140천원 × 69명 × 12개월 = 115,92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40%) 및 시군(60%) 매칭 지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